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안

<2021. 01. 18>

I 추진 목적

- 산재노동자의 의료재활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 및 수리료 개선을 통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시범 포함) 반영

II 개선 의견

1. 재활보조기구 수가 인상

가. 수·전동휠체어-바퀴분리형

☐ 현행기준 및 운영실태

- (신청사유) (주) 다우테크놀로지(' 20.3.3)에서 재활공학연구소로 수·전동휠체어-바퀴분리형의 물가 상승률 및 부품 추가로 제품비 인상요청

- (' 13.10) 국책연구과제*수행 결과물로 Barrier-free 휠체어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08.12월-13.09월, 약76억 원)으로 기술 개발 완료
- (' 14.01) 수·전동휠체어 급여 신설(살내·외 사용이 가능 등 산재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지원)
지급금액: 수·전동휠체어의 순수 제작 원가(금3,934,000원)로 적용
- (' 18.06) 경량형 전동휠체어 제품을 (주)다우테크놀로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 목적: 재활공학연구소의 연구·개발 제품의 사용화 추진
· 내용: '경량형휠체어'에 대한 연구개발 기술 개발제품과 금형도면, 제품의 생산방법·조립 기술 등
· 기술료: 경상기술료(선급기술료 25,000천원, 표준기술료: 순매출액의 2%, 계약기간:18.6.8-24.12.31
- (' 21.01) 수·전동휠체어에서 수·전동휠체어-바퀴분리형으로 명칭 변경

- (현행기준) 수·전동휠체어-바퀴분리형*은 재활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내구연한 6년으로 산재보험 별도 인정 제품

* (지급대상)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 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구분(분류)	분류번호	분류(유형)	고시금액 (기준금액)	적용일자	비고
휠체어	타-32-4	수·전동휠체어 - 바퀴분리형	3,934,000원	'14.4.1.	산재
그 밖의 보장구	타-32-1	전동휠체어	2,090,000원	'07.3.6.	건보

※ (건강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에 대하여 결정가격 고시하고 있으며, 지급결정 시 기준 금액, 고시금액, 실구입가 중 최저금액 적용

○ (운영실태) 수·전동휠체어-바퀴분리형은 급여 신설 이후 현재까지 155개 제품 지급

- ' 14. 4. 1. 급여신설 이후 핵심부품 업그레이드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제품원가 인상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운영

분류	분류명	금액	지급건수(개)							비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타-32-4	수·전동휠체어 - 바퀴분리형	3,934,000원	22	34	25	25	15	5	29	

□ 개선방안

○ 수·전동휠체어-바퀴분리형 제품 원가 현실화 위해 금액인상

분류번호	분류명	금액(원)		비고
		현행	개선(안)	
타-32-4	수전동휠체어 - 바퀴분리형	3,934,000원	4,506,000원	

※ (붙임) 부품 업그레이드 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

나. 수·전동휠체어-바퀴분리형

□ 현행기준 및 운영실태

○ (신청사유) 부속품 없이 지급되는 집노기(고무제-역류방지형)는 사용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속품을 포함한 수가로 인상 요청

○ (현행기준) 집뇨기(고무제-역류방지형)*는 내구연한 1년으로 산재보험 별도 인정 제품

* (지급대상) 뇌손상, 척수손상, 말초신경 손상, 비뇨기계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배뇨 제어가 어려운 경우

구분(분류)	분류번호	분류명	금액	적용일자	비고
기타	타-37-6	집뇨기(고무제-역류방지형)	57,000원	07.03.06	산재

○ (운영실태) 집뇨기(고무제-역류방지형)는 최근 5년 동안 2,649개 제품 지급

- 급여신설 이후 ' 12년말 까지 공급하던 국내 유일 업체의 부도로 인한 지급 중단으로 외국제품으로 대체 지급되면서 가격 차이로 인해 부속품 없이 집뇨백만 지급 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자의 불편함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운영되어 왔음

분류	분류명	금액	지급건수(개)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20	
타-37-6	집뇨기 (고무제-역류방지형)	57,000원	606	544	543	518	438	

□ 개선방안

○ 집뇨기(고무제-역류방지형) 제품 원가 현실화 위해 금액인상

분류번호	분류명	금액(원)		비고
		현행	개선(안)	
타-37-6	집뇨기 (고무제-역류방지형)	57,000원	213,000원	

※ (붙임) 부속품 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

2.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신설

□ 완관절 장치

○ (신청사유) 의수에 사용되는 완관절 장치는 수리료가 없음

□ 개선방안

○ 집뇨기(고무제-역류방지형) 제품 원가 현실화 위해 금액인상

분류번호	분류명	현행 기준	개선 의견	비고
타-46	완관절 장치	신설	325,000원	

※ (붙임) 부속품 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절 재활보조기구>

구분	세 구분	현행 기준	개선 의견	개선 사유
3. 기타	- 휠체어	○ 타-32-4 수·전동휠체어 - 바퀴분리형 3,934,000원	○ 타-32-4 수·전동휠체어 - 바퀴분리형 4,506,000원	- 부품 업그레이드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수가를 인상하고자 함.
	- 기타	○ 타-37-6 집뇨기 (고무제-역류방지형) 57,000원	○ 타-37-6 집뇨기 (고무제-역류방지형) 213,000원	- 부속품 없는 집뇨기(고무제-역류방지형)만으로 사용 불가능함.
4. 수리료	- 팔의지	<신설>	○ 타-46 완관절 장치 325,000원	- 의수에 사용되는 완관절 장치는 수리료가 없음.
	- 기타	<신설>	○ 타-92 벨크로 교환 28,920원	- 팔의지, 다리의지, 보조기에 사용되는 벨크로는 수리료가 없음.

○ 산재보험 직무지원 시범 재활수가 산정기준 개선

- 수가 신설: 하지의지 1종 (맞춤형 의족 - 특수형)

※ 직무지원 보조기구 신설 요청내역(〔붙임 1〕 참조)

<직무지원 보조기구 시범 재활수가 >

구분	현행 기준	개선 의견	개선 사유
하지의지	<신설>	○ 맞춤형 의족 - 특수형 00원	- 직무 특성상 보행이 많아 장기간 사용시 내구성이 필요한 특수 맞춤형 의족에 대한 수가가 없음.

